

# 감 사 의 건 서

수협법 제73조에 의하여 조합장으로부터  
제출된 2019년도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 
그 내용이 적정함을 인정합니다.

2020. 02. 27.

## 대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

감 사 박 태 진



감 사 강 동 윤

